

[변경 대비 표]

■ 변경 집합투자기구 및 변경 서류

펀드명	(변경 전) BNK튼튼단기채증권투자신탁(채권)
	(변경 후) BNK내일환매초단기채증권투자신탁(채권)
변경서류	집합투자계약
변경사유	- 펀드명 변경 - 투자대상 변경 - 환매주기 단축 변경
효력발생일	2025년 04월 17일

■ 변경대비표

항목	변경 사유	변경 전	변경 후
펀드명	펀드명 변경	BNK 튼튼 단기채증권투자신탁(채권)	BNK 내일환매 초단기채증권투자신탁(채권)
제3조(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명칭 등)	펀드명 변경	① 이 투자신탁의 명칭은 "BNK 튼튼 단기채증권투자신탁(채권)"이라 한다. ② ~ ③ (생략)	① 이 투자신탁의 명칭은 "BNK 내일환매 초단기채증권투자신탁(채권)"이라 한다. ② ~ ③ (현행과 동일)
제17조(투자대상 자산 등)	투자대상 변경	① 집합투자업자는 ---(생략)--- 운용한다. 1. 법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국채증권, 지방채증권, 특수채증권(법률에 의하여 직접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채권을 말한다), 사채권(취득시 신용평가등급이 A- 이상이어야 하며, 주식관련사채, 사모사채권, 「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」제59조에 따른 단기사채 등(취득시 신용평가등급이 A2- 이상)를 포함하고, 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에 의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발행하는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은 제외한다)(이하 "채권"이라 한다) 2. <u>기업어음증권(기업이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발행하는 약속어음으로 법 시행령 제4조에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것 및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</u>	① 집합투자업자는 ---(현행과 동일)--- 운용한다. 1. 법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국채증권, 지방채증권, 특수채증권(법률에 의하여 직접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채권을 말한다), 사채권(취득시 신용평가등급이 A- 이상이어야 하며, 주식관련사채, 사모사채권, 「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」제59조에 따른 단기사채 등(취득시 신용평가등급이 A2- 이상)를 포함하고, 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에 의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발행하는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은 제외한다) 및 <u>기업어음증권(기업이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발행하는 약속어음으로 법 시행령 제4조에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것을 말하며, 취득시 신용평가등급이 A2- 이상인 것에 한한다)</u> (이하 "채권"이라 한다) 2. 기업어음증권을 제외한 어음 및 양도성 예금증서(양도성 예금증서를 제외하고는 취득시 신용평가등급이 A2- 이상이 어야 한다. 이하 "어음"이라 한다)

		<p>자산담보부 기업어음(ABCP)을 포함한다), 기업어음증권을 제외한 어음 및 양도성 예금증서(양도성 예금증서를 제외하고는 취득시 신용평가등급이 A2- 이상이어야 한다. 이하 "어음"이라 한다)</p> <p>3. ~ 9. (생략)</p> <p>② ~ ③ (생략)</p>	<p>3. ~ 9. (현행과 동일)</p> <p>② ~ ③ (현행과 동일)</p>
제18조(투자대상 자산 취득한도)	투자대상 변경	<p>1. <u>단기사채 및 어음에의 투자는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50% 이상으로 한다.</u></p> <p>2. <u>채권(단기사채는 제외한다)에의 투자는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50% 미만으로 한다. 다만, 채권 및 어음에의 투자는 투자신탁 자산총액 60% 이상으로 한다.</u></p> <p>3. ~ 8. (생략)</p>	<p>1. <u>채권에의 투자는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60% 이상으로 한다. 단, 취득시 신용평가등급이 AA- 등급 미만인 채권에의 투자는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50% 이하로 한다.</u></p> <p>2. <u>어음에의 투자는 투자신탁 자산총액 40% 이하로 한다.</u></p> <p>3. ~ 8. (현행과 동일)</p>
제26조(환매업무)	환매주기 단축 변경	<p>① ~ ⑤ (생략)</p> <p>⑥ 본 조에 따라 환매청구를 받거나 환매에 응할 것을 요구받은 집합투자업자(집합투자자산을 보관·관리하는 신탁업자를 포함한다)는 수익자가 환매를 청구한 날부터 <u>3영업일(17시 경과 후에 환매청구시 4영업일)</u>에 수익자에게 환매대금을 지급한다.</p> <p>⑦ ~ ⑨ (생략)</p>	<p>① ~ ⑤ (현행과 동일)</p> <p>⑥ 본 조에 따라 환매청구를 받거나 환매에 응할 것을 요구받은 집합투자업자(집합투자자산을 보관·관리하는 신탁업자를 포함한다)는 수익자가 환매를 청구한 날부터 <u>2영업일(17시 경과 후에 환매청구시 3영업일)</u>에 수익자에게 환매대금을 지급한다.</p> <p>⑦ ~ ⑨ (현행과 동일)</p>
제27조(환매가격)	환매주기 단축 변경	<p>수익증권의 환매가격은 수익자가 판매회사에 환매를 청구한 날부터 <u>3영업일(17시 경과 후에 환매청구시 4영업일)</u>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으로 한다.</p>	<p>수익증권의 환매가격은 수익자가 판매회사에 환매를 청구한 날부터 <u>2영업일(17시 경과 후에 환매청구시 3영업일)</u>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으로 한다.</p>
제28조(환매연기)	환매주기 단축 변경	<p>① ~ ⑥ (생략)</p> <p>⑦ 집합투자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6조제1항에 따른 환매청구에 응하지 아니할 수 있다.</p> <p>1. 수익자 또는 질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할 자를 정하기 위하여 상법 제354조 제1항에 따라 일정한 날을 정하여 수익자명부에 기재된 수익자 또는 질권자를 그 권리를 행사할 수익자 또는 질권자로 보도록 한 경우로서 이 <u>일정한 날의 전전영업일(17시 경과 후에 환매청구를 한 경우 이 일정한 날의 전전영업일)</u>과 그 권리를</p>	<p>① ~ ⑥ (현행과 동일)</p> <p>⑦ 집합투자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6조제1항에 따른 환매청구에 응하지 아니할 수 있다.</p> <p>1. 수익자 또는 질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할 자를 정하기 위하여 상법 제354조제1항에 따라 일정한 날을 정하여 수익자명부에 기재된 수익자 또는 질권자를 그 권리를 행사할 수익자 또는 질권자로 보도록 한 경우로서 이 <u>일정한 날(17시 경과 후에 환매청구를 한 경우 이 일정한 날의 전영업일)</u>과 그 권리를 행사할 날까지의</p>

		행사할 날까지의 사이에 환매청구를 한 경우 2. (생략)	사이에 환매청구를 한 경우 2. (현행과 동일)
<부칙>		<신설>	< 부 칙 7> (시행일) 이 투자신탁은 2025년 04월 17일부터 시행한다.

<끝>